

분야별정보 ≡ 세금/재정 ≡ 재정공시를 선택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□ 또한,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 중 중요한 항목을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'유사 자치단체'와 비교하여 볼 수 있는 지방 재정 통합공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http://lofin.mogaha.go.kr/lofin_stat/summary2/JaChi_Normal_Summary_info.jsp)

□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. 담당자 : 재무과 강미현(☎ 879-5372)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-1199호 봉천제4-1-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안) 공람·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470호(1973.12.1.)로 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60호(2004.2.27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61호(2009.11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61호(2014.07.17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99호(2016.11.3.)로 정비구역 (변경)결정된 봉천제4-1-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(조합)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. 봉천제4-1-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관악구청 주택과(☎ 879-6303, fax 879-7831 또는 우편발송)에 불임 의견서를 작성·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9월 7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17.09.08. ~ 2017.09.27.

4.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

대상자	주 소	사전통지금액	미배달사유	비 고
-----	-----	--------	-------	-----
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주택과, 봉천제4-1-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

다.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용

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봉천제4-1-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: 조합장 배인태 및 관악구 구암길 53, 2층

3)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
4)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- 아파트 9개동, 997세대(임대 200, 일반 797세대)

- 최고28층/지하3층, 건폐율/용적률 20.9%/285.14%(이하 생략 : 관계도서 참조)

라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
마. 의견제출 방법 : 공람의견서(불임)을 작성 후 관악구청 주택과 방문, 우편발송(서울 관악구 관악로145, 관악구청 본관6층 주택과) 또는 fax(879-7831) 제출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-1203호 주거급여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46조(비용의 징수), 「주거급여법」 제20조(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)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에게 보장비용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기타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17년 9월 7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공고내용 : 주거급여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2. 근거법규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, 주거급여법 제20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지방세기본법 제33조

3. 공고기간 : 2017.09.07. ~ 2017.09.21.